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9156호
시행일자 2020. 10. 30.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과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참 조
제 목 **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43호(2020.10.29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일부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개정내용 :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-분획분석 급여기준 신설 등 18항목 개정

나. 시행일 : 2020.11.01.(월)부터

붙임 :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